

『수상레저안전법』 상의 구명조끼 의무화에 관한 연구

박창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회장

요 약 : 수상레저활동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배경 및 관련법률 제정 경위를 살펴보고, 현재 수상레저활동 중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현황 분석을 통한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핵심용어 : 수상레저, 구명조끼, 안전저해행위, 안전장비 미착용, 교육훈련, 대국민 홍보



수상레저안전법상의 구명조끼 의무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회장 박창호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추진경위

1. 수상스키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보함에 가입하지 아니한 업체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관계로 피해 보상을 받지못하자,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계에 시급히 법률 제정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것이 구체적인 법 제정작업을 촉발하는 계기
2. 97년7월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초안 작성
3. 97년 8월 18일 공청회 개최
4. 97년 11월 26일 국회제출
5. 99년 2월 8일 수상레저안전법 공포
6. 2000년 1월 28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정
7. 2000년 2월 8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정
8. 2000년 2월9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1. 수상레저활동 수요급증에 따른 수급불균형, 영세한 시설로 인한 빈번한 안전 사고 및 불완전한 피해자 보상, 수상레저문화의 미정착으로 인한 무질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시 구명등의 착용 의무화 규정
2. 2008.03.28.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시 구명등의에서 구명조끼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7., 2019. 8. 27.>
2.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 chpark59@naver.com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조끼·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사례

HOME > 뉴스 > 사례
 해양, 구명조끼 미착용 수상레저객 검거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7.19 | 인천해경,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총 43건 단속

포항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수상레저 3명 적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구명조끼 안 입혀 사망' 수상레저업체 직원 집행유예

뉴스톱 | 승인 2019.08.01 | "구명조끼 미착용 여전"...뉘시어선 불법 행위 25% 증가

부산일보 | 2019.06.17 11:37 |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보트 타고 뉘시한 2명 적발



수상레저활동 관련 사고사례 유형

1. 운항자의 운전미숙
2. 기상악화 등 주변여건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
3. 장비고장 또는 안전장비 미비
4. 해수욕장 등 다수이용시설에서의 위험한 운항,
5. 통제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원거리 운항, 안전수칙을 무시한 과신행위
6. 열악한 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



사고방지 사례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에서는 캠페인, SNS, 유튜브, 홍보물 등 각종매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사례

경기도, 남북한강 수상레저 안전지해행위 85건 적발

경기도, 7월 11일~8월 31일 7주간 '내수면 수상레저 집중 안전관리' 결과 발표

경진태기자 | 입력 2020-09-25

[뉴스톱=경진태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형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남·북한강 수상레저사안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급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총 85건 중 24건 28% 해당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단속) 현황

<2019해양경찰 백서>

구분	계	무면허 조종	주요 조종, 승객 거부	무등록 사업	안전 장비 미비	안전 장비 미착용	운항 규칙 미준수	금지 구역 (영양 구역 위반)	수상 레저 활동 시간 미준수	사정 명령 미이행	원거리 활동 미신고	정형 초과	기타
2016	514	75	14	6	1	172	26	1	49	4	35	13	115
2017	530	52	16	8	53	155	40	2	58	4	48	15	109
2018	402	42	16	2	4	134	46	4	70	0	23	13	

안전장비 미착용 적발건수가 가장 많음

수상레저 스포츠 이용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인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볼 때, 이용자 및 사업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결론

- ❖ 수상레저안전법 등 기본적인 제반 준수 사항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 ❖ 수상레저 관련 교육 훈련 시 「구명조끼 착용의무화」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및 충분한 교육시간 배정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www.kasa122.or.kr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문화의 발전과 보편화를 위해 해양레저 경석과 골킥행사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